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인천검단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3. 12.12.)에 따라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오류 개선을 위해 구조설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지방건축위원회 검증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적용 확대를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행 구조안전 확인의 절차를 구조, 하중 변경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안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 1) 무량판 구조의 기둥이 하중 전반을 지지하는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시 안전관리를 강화
- 2)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은 공사 중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배근 확인을 의무화

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성 강화(안 제5조의5제6항제2호 차목)

- 1) 인허가 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해 구조안전 심의 등을 하도록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다.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6호다목)

- 1)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대상 조건에 관한 현행 조문 오류를 정정하고, 규정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수정

라.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절차 합리화 등(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 1)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선행위로서 구조부 변경이 없고 구조 내력 변경이 경미한 증축 및 대수선은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
- 2) 안 제2조제18호다목 신설사항을 안 제32조제2항제8호에 반영하고, 종전 제6조제1항제6호다목 본문에서 정하던 “건축”을 안 제32조제4항 규정에서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으로 직접 명시

마. 관계전문기술자 자격규정 정비(안 제91조의3제3항)

- 1)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야하는 관계기술자 자격을 현행 「기술사법」에서 정하는 토질·지질 전문분야 직무 범위로 정비

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안 제91조의3제8항)

- 1) 구조도면 작성 등에 관한 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 구조설계 협력 범위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직접 인용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를 가진 건축물. 다만, 무량판 구조인 기둥 단면적의 합이 내력벽, 기둥 등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 전체 단면적 합의 4분의 1 이상인 층을 가진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는 반드시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존 건축물 중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내진성능 확보 의무가 없었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제32조제4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한 건축물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이 제2조제18호다목의 단서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하층의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건축 또는”을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또는”으로 한다.

#### 8. 제2조제18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건축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화·방수·단열 등의 성능개선을 위한 수선을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구조부 등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구조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91조의3제3항 중 “토목 분야”를 “토질 및 기초”로,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을 “지질 및 지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구조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인 무량판 구조의 공사감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8항다목 및 제19조제3항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받거나 수리된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3.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받거나 수리된 건축허가, 대수선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제3조(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  
일 당시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91조의3제1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 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전문기술  
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력 업무  
가 끝날 때까지는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7의2. (생 략)</p> <p>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나. (생 략)</p> <p>&lt;신 설&gt;</p> <p style="padding-left: 2em;">다. (생 략)</p> <p>19. (생 략)</p> <p>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 ⑤ (생 략)</p> <p>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p>	<p>제2조(정의) ----- -----.</p> <p>1. ~ 17의2. (현행과 같음)</p> <p>18. ----- ----- -----.</p> <p style="padding-left: 2em;">가.·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다. <u>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를 가진 건축물. 다만, 무량판 구조인 기둥 단면적의 합이 내력벽, 기둥 등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 전체 단면적 합의 4분의 1 이상인 층을 가진 경우로 한정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라. (현행 다목과 같음)</p> <p>19.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p>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  
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 자. (생략)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  
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  
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  
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  
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  
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  
한다)

카. (생략)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  
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  
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  
-----  
-----  
-----  
----- 해당  
한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  
는 반드시 해당 전문위원  
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카. (현행과 같음)

제6조(적용의 완화)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  
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나. (생략)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  
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  
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  
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  
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  
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  
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  
통령령 제21629호 건  
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  
통령령 제21629호 건  
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기존 건축물 중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내  
진성능 확보 의무가 없었  
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  
물의 건축주가 제32조제4  
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  
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한 건축물

령으로 개정된 이후부  
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으로 개정되기 전  
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  
통령령 제25786호 건  
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  
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  
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  
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  
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  
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  
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 12. (생략)

② (생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사감리) ①·② (생략)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나. (생략)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단서 신설>

2. ~ 4. (생략)

제19조(공사감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1.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이 제2조제18호다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의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② (생략)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 ~ ⑦ (생략)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

할 수 있다.

④ -----  
----- 중축, 일부 개  
축, 일부 재축 또는 -----  
-----  
-----  
-----  
-----  
-----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토  
질 및 기초 ----- 지질 및 지  
반 -----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  
서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⑨ (생략)

따라 구조의 -----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5